

# 일자리 안정자금

## ● 사업목적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

## ● 사업내용

**지원대상** (원칙)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

-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
  - ①공동주택(아파트·연립주택·다세대주택) 경비원·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
  - ②30인~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
  - ③30인~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
  - ④30인~300인 미만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·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

### 지원요건

-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 
\* 보수액: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(기본급+통상적수당+연장근로수당 등)
-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,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
\* 단, 특수관계인(사업주, 배우자, 직계존비속)은 제외

### 지원금액

-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7만원,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
-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(근로일) 비례 지원  
\*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: 40시간 미만~30시간 이상 4만원, 30시간 미만~20시간 이상 3만원, 20시간 미만~10시간 이상 2만원, 10시간 미만 미지원
- \* 일용근로자 지원수준: 22일 이상 5만원, 19일 이상~21일 이하: 4만원, 15일 이상~18일 이하 3만원, 10일 이상~14일 이하 2만원

## ● 신청 및 지급

---

**신청** 근로복지공단 방문. 우편. 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,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

**지급** **계좌로 직접 지급**(매월 15일)

## ● 지원문의

---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: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
-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: [www.jobfunds.or.kr](http://www.jobfunds.or.kr)